

#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, 달라지는 생활지원비 바로 알기

격리의무(7일)가 격리권고(5일)로 변경되더라도  
격리참여 및 이행을 통해  
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

# 생활지원비·유급휴가비 지원대상



**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,  
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(입원자 제외)하고,  
각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자**

	생활지원비	유급휴가비
<b>지원대상</b>	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 격리자 (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)	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
<b>지원제외</b>	① 소득기준 초과자 ②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은 자 ③ 격리 미이행자	①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②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자 ③ 격리 미이행자
※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대응지침(지자체용)<3의2.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관리> 확인		

※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 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지원대상에 해당  
(공동격리 참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)

※입원자는 입·퇴원서로 격리참여 같음

# 격리참여와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



## 격리참여

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(5일) 동안 건강 회복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.

##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

① **온라인**(양성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),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 
 ② **전화** 또는 ③ **대리방문**하여 **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**  
**신청할 수 있습니다.**

\*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생활지원비·유급휴가비용 신청 가능

# 격리참여자 등록 후, 격리방법



## 격리장소 및 방법

현재 거주지를 원칙으로 하며, 격리장소 내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.

## 격리 중 외출 시

원칙적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격리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나, ① 병·의원 방문, ② 의약품 구매·수령, ③ 임종, ④ 장례, ⑤ 시험, ⑥ 투표의 경우 일시적 외출이 가능하며, 외출 시 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를 착용하고, 가급적 도보·자차 및 방역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합니다.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(지자체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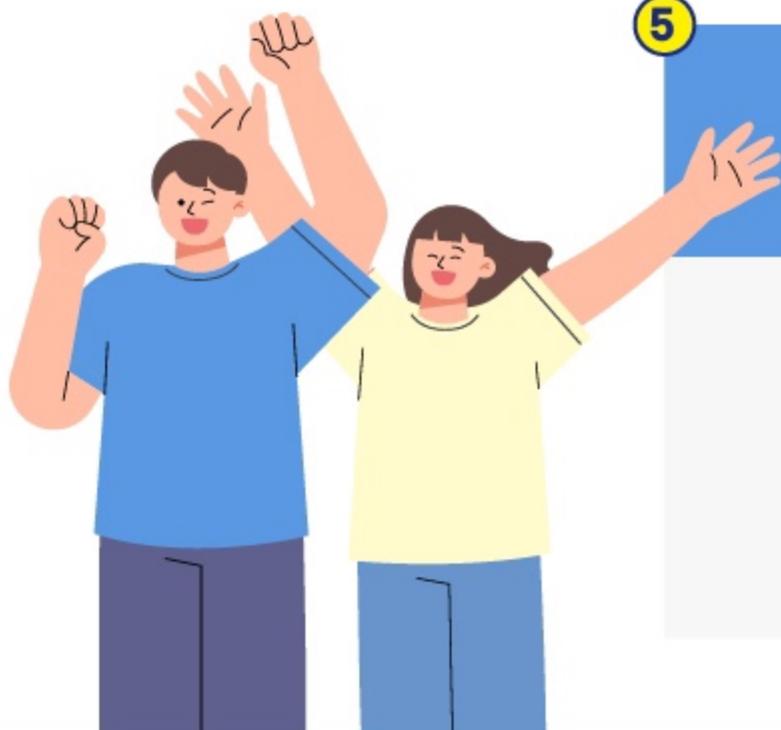
<3의2.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관리> 규정에 따라 격리를 실시합니다.

\*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지침 확인 가능

## ㉔ 격리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받았습니다. 이후 적발될 경우 제재조치가 있나요?

격리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, **지원금 전액 환수조치** 됩니다.

# 달라진 생활지원비 지금절차



# 코로나19 입원·격리자 생활지원비 안내



## ✓ 지원대상

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격리자 (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)

## ✓ 지원제외

- ① 소득기준 초과자
  - ②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은 자
  - ③ 격리 미이행자
- ※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대응지침(지자체용)<3의2.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관리> 확인

## ✓ 지원금액

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 
- 2인 이상인 경우 50%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(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 지원)

## ✓ 신청기간

격리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

## ✓ 신청방법

[온라인] 정부24(www.gov.kr) [오프라인]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

# 코로나19 입원·격리자 유급휴가비 안내



## ✓ 지원대상

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

## ✓ 지원제외

- ①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
  - ②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자
  - ③ 격리 미이행자
- ※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대응지침(지자체용)<3의2.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관리> 확인

## ✓ 지원금액

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,000원 지원(최대 5일)

## ✓ 신청기간

격리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

## ✓ 신청방법

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